

보험계약의 화재손해(법률행위)로 본 분쟁조정사례

이 성 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책임역

1. 금융분쟁 조정사례

가. 다툼이 없는 사실

'95. 8. 12. 신청인 ○○금속(주)와 피신청인간에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금속(주), 보험기간 '95. 8. 12-'98. 8. 12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6. 3. 19 위 화재보험계약에 부보된 변전실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변전실 건물 및 기계 등이 소손된 사고가 발생한 사실 등에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나.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이 건 화재로 인해 소실된 변전실의 기계는 보험의 목적물을 표시한 보험증권의 별지 명세서상 부호 7(기계기구 일체)의 보험가입금액(2,004,162,343원)에 포함되어 있고, 사회통념상 변전실이라 함은 변전설비를 갖춘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보험가입금액의 산출근거에도 포함되어 있는 변전실 내 기계를 단지 수용장소가 틀리다는 이유만으로 보상대상에서 제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건 보험 목적물의 보험가입금액의 산출근거라고 주장하는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와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보험계약 체결시 신청인이 제출하지 않은 자료인데, 보험사고 발생 후 동 자료가 보험가입금액의 산출근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어 인정할 수 없고, 이 건 보험계약의 보험 목적물은 보험증권상의 별지 명세서에 표시되어 있는 것에 한정되는 것이며, 이 건 화재사고는 보험 목적물 부호4인 변전실에서 발생하여 변전실 및 변전실 건물 내 수용된 변전설비 및 기계류 일부가 소실되었는 바, 동 명세서상의 '기계'는 부호3인 공장건물 내에 수용된 것으로 한정하고 있어 변전실의 기계는 보험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변전실 건물의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이 건 보험계약 체결경위를 살피건대, 신청인은 '94. 8. 12-'95. 8. 12까지 이 건 보험계약의 내용과 동일하게 ○○화재해상보험(주)에 가입한 사실이 있고, 동 보험기간이 만료된 후 피신청인에게 가입하면서 ○○화재해상보험(주)와 체결했

던 내용과 동일하게 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청하여 피신청인은 ○○화재해상보험(주)에서 발급한 보험증권을 보고 동일하게 이 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화재해상보험(주)과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가입금액의 산출자료로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근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건 보험계약의 보험 목적의 보험가입금액은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산출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상 기계류에는 변전실 내의 기계도 포함되어 있는 점과 이 건 보험의 목적이 공장을 포함한 건물 전체인데 그 중에서 변전실의 기계만 제외하고 보험가입한다는 것은 일반사회통념과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인 신청인의 부당행위는 변전실 내의 기계도 포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보험가입금액에 동 기계류에 대한 가액도 포함되어 있어 이에 상응하는 보험료도 이미 피신청인이 징수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이 건 화재로 인해 소손된 변전실 건물뿐만 아니라 변전실 내 기계도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본 사례에 대한 소고

가. 서설

사람들은 매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여러 형태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그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어떠한 계약이든 계약 당사자가 그 법률관계에서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해 미리 하나도 빠짐없이 명문으로 정해놓은 경우에는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별다른 다툼이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들을 예상하여 하나도 빠짐없이 규정해 놓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아무리 명문으로 계약을 완벽하게 체결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분쟁은 발생하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계약의 내용이 순전히 기술적인 내용으로만 되어 있다면 모르되 법규적·규범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계약은 그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계약 당사자간에 해석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제시된 분쟁조정사례의 쟁점은 당사자간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해석문제 즉 법률행위의



해석문제가 아닌가 싶다. 변전실 내 기계를 본 건 화재보험계약의 보험목적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제외하여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점을 중심으로 법률행위 해석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나. 법률행위 해석의 의의

법률행위의 해석이라 함은 법률행위의 목적 내지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당사자가 행한 그대로의 법률행위는 언제나 반드시 충분히 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여기서 표시행위를 이루는 언어·동작 등의 불완전·애매한 것을 완전·명확하게 하고, 비법률적인 것을 법률적으로 구성하며, 당사자가 달성하려는 목적에 법률이 조력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법률행위의 해석이 필요하게 된다.

다. 법률행위 해석의 기본원칙

(1) 자연적 해석의 원칙

자연적 해석이란 표현의 문자적·언어적 의미에 구속되지 않고 표의자가 부여한 의미를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자연적 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표시된 언어에 집착하여 외면적 의미만을 읽지 말고 당사자가 부여한 진정한 의미 즉 내면의 의사를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자연적 해석은 특히 표의자 이외의 다른 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의사표시의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적은 경우에 영향을 미친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해석에 있어서는 언어의 객관적 의미보다 표의자의 의도를 존중해야 한다.

(2) 규범적 해석의 원칙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행위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 상대방의 시각에서 표시행위에 따라 법률행위 성립을 인정하는 해석, 즉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경우 상대방의 입장에서 지득한 외면적 의미를 객관적·규범적으로 탐구하는 해석방법을

말한다.

자기결정의 원칙으로부터 자연적 해석이, 자기책임의 원칙으로부터 규범적 해석이 도출되므로 먼저 자연적 해석에 의하여 내심적 효과의사를 확정하고 이것이 불가능할 때에 한하여 규범적 해석에 의하여 표시행위에 따라 추단되는 효과의사를 확정하여야 한다.

(3) 보충적 해석의 원칙

법률행위의 내용에 관한 약정의 공백이 있어 이를 보충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 하는 해석방법을 말한다.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성립이 일단 긍정된 후에 보충적 해석이 개시된다.

약정의 공백은 민법 제106조 관습 및 임의규정으로 보충된다. 간극을 보충하는 방법은 양당사자의 실제 의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양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확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각종 사고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면서 “향후 민사상, 형사상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라는 각서를 받는 수가 있으나, 이에 관하여 가해자나 피해자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의 발생으로 피해자가 영구불구자로 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포기각서에 의하여 포기된 것이 아니라는 판례(대법원 1980. 11. 25, 80다1568)가 있다.

3. 맺는 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위에서 제시한 분쟁조정사례에서 사회통념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보충적인 해석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계약 체결시 청약서 등에 동산의 수용장소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